

새 시대 농어업인 삶의질향상정책 개선 방향

송미령·심재현·권인혜

요약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의 삶의 질 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급격한 인구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더욱 심각하여 지방소멸론까지 대두됨.
- 농어촌지역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인구 구성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추세 속에서 도시에 비해 기본적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열악 등 정주 여건의 도-농 격차도 심화되고 있음.
- 농어촌 삶의 질을 저하하는 악순환 고리를 단절하려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정책 거버넌스 구축과 혁신적 공공투자가 필요함.

삶의질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 삶의질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부처 간 협력·조정 등 정책 환류 미흡, 범부처 정책으로서의 도입 취지 약화 등 한계 지적

- 2004년 제정된 '삶의질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삶의질위원회를 통해 관련 부처들의 정책을 포괄하는 삶의질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삶의질시행계획 점검·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 농어촌 영향평가 등을 추진해오고 있음.
- 삶의질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위원회 및 사무국으로서 농식품부의 담당 간사 조직을 두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의 이행을 위한 부처 간 협력·조정 등 정책 환류 미흡, 농어촌서비스기준 등 필수 수요를 지원하는 정책수단 불충분, 농어촌 현장에서 삶의질정책에 대한 낮은 체감도 등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새 정부 출범 후 농특위원회와 삶의질위원회와의 통합을 맞아 삶의질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 농어촌 삶의질정책 추진의 지속성 확보 시급:** 법상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농특위로 통합됨에 따라 삶의질정책 추진의 지속성·일관성 보장을 위해 통합 농특위원회 존속기한 삭제가 필요함.
- 다 부처 삶의질정책에 대한 조정 기능 실질화:** 삶의질위원회에서 제기된 정책환류 미흡 문제를 극복하고 통합 농특위원회에서 다양한 부처의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및 점검·평가 기능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실효성 있는 통합 농특위원회 활동을 위한 추진체계 전문성 강화:** 범부처 삶의질정책에 대한 통합 농특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려면 관련 분야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위원회-사무국-전문지원기관으로 구성되는 전문성을 갖춘 업무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함.
- 농어촌 현장까지 전달·체감되는 정책 거버넌스 구축:** 위원회 활동의 추진체계를 넘어 중앙정부 정책이 지자체와 주민까지 전달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현장의 정책 체감도 제고 노력도 필요함.
- 농어업·농어촌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및 지지 기반 마련:** 통합 농특위원회의 활동은 농업·농촌 분야의 직접적 이해관계자를 넘어 일반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농어업·농어촌의 가치를 창출·전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함.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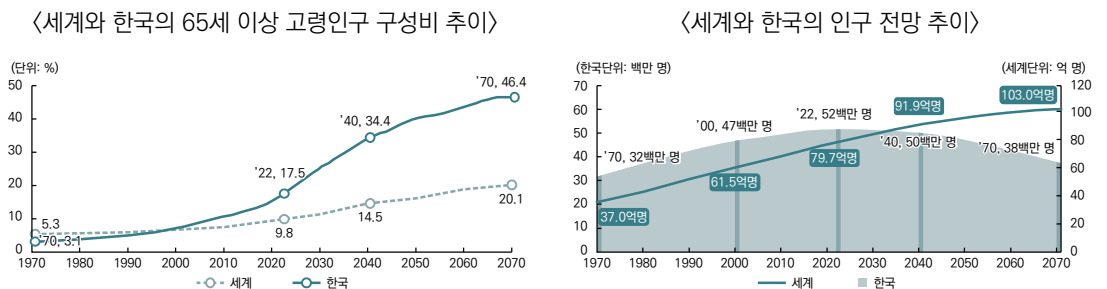
농어촌의 현실

1.1. 농어촌의 인구 변화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더욱 심각하여 지방소멸론까지 대두

-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2년 기준 0.78명으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낮음. 도시지역 유소년 인구비율은 2000년 21.6%에서 2020년 12.4%까지 낮아진 데 반해, 농촌지역은 그보다 낮아 2000년 18.6%에서 2020년 10.8%까지 떨어짐.
- 통계청은 세계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지만 2022년 5천 2백만 명인 대한민국 인구가 2040년에 5천만 명으로 감소하고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70년에는 3천 8백만 명까지 줄어든 것으로 전망함.
-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소멸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전국 82개 군 지역 중 72곳이 인구감소 지역이며, '92년 정점인구와 비교하여 '17년까지 평균적으로 1만 7천 명이 감소함.
- 농촌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00년 14.7%에서 2015년 21.4%, 2020년 23.0%까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고령화율이 20%가 넘는 읍면이 전국 농촌(읍·면) 중 대다수인 87.5%를 차지하며, 고령화율이 7% 미만인 읍면은 전국에 8곳에 불과함.

〈그림 1〉 세계와 대한민국 인구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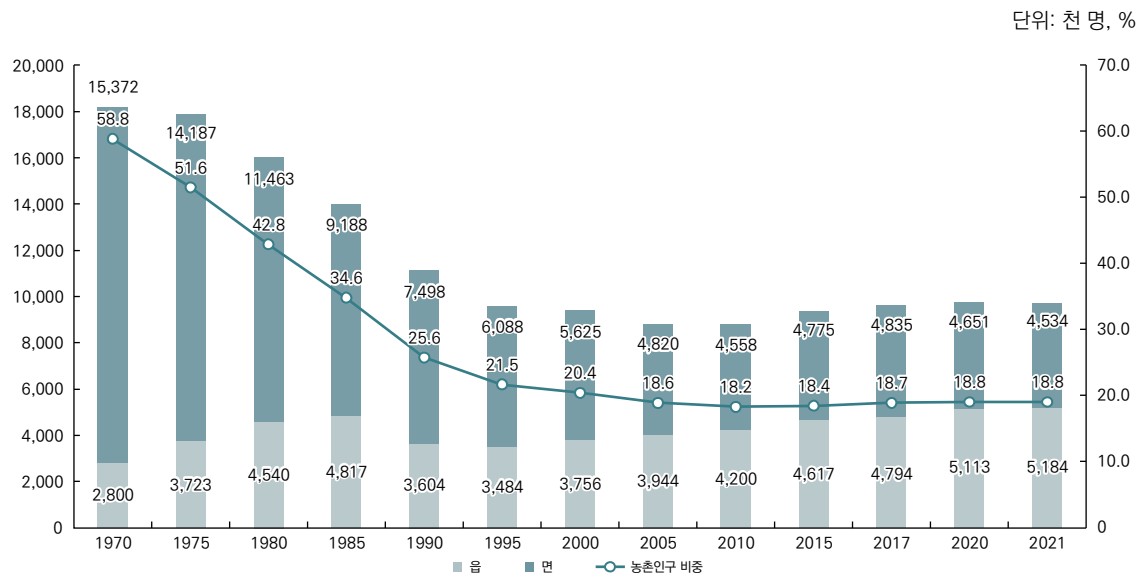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2. 9. 5.).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수도권·도시 근교에서는 농어촌 인구가 소폭 증가하나 농어촌지역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 농어촌 인구는 계속 감소하다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농·귀촌 증가, 대도시 근교 농촌지역에서의 주거단지 개발 등에 힘입어 2010년부터는 소폭 증가 및 유지되는 경향을 보여 2021년 현재 총인구의 18.8%인 971.8만 명이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음.
- 그러나 농어촌 인구 증가는 수도권과 도시의 근교, 읍 지역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농어촌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면 지역 인구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그림 2〉 농어촌 인구 변화(1970~2021년)



자료: 통계청(각 연도). 인구총조사; 심재현, 민경찬(2023).

〈표 1〉 농어촌(읍·면)지역 인구 변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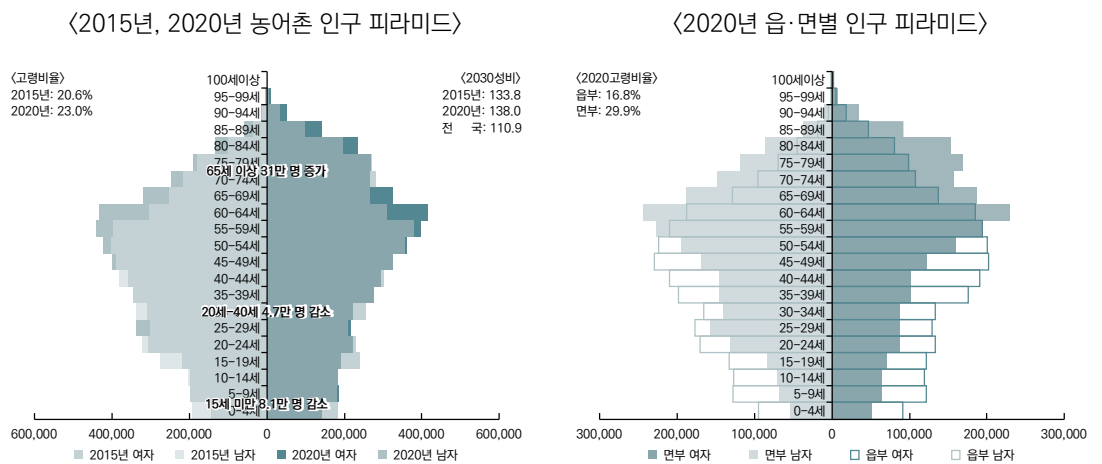
| 구분 | 읍면 | 수도권 | | | 비수도권 | | |
|--------|----|-------|-------|---------|-------|-------|---------|
| | | 2015년 | 2020년 | 연평균 증가율 | 2015년 | 2020년 | 연평균 증가율 |
| 도농 복합시 | 읍부 | 1,200 | 1,415 | 3.35 | 1,352 | 1,456 | 1.48 |
| | 면부 | 738 | 669 | -1.95 | 1,887 | 1,957 | 0.72 |
| | 계 | 1,938 | 2,083 | 1.46 | 3,240 | 3,413 | 1.04 |
| 군 | 읍부 | 95 | 96 | 0.21 | 1,970 | 2,146 | 1.73 |
| | 면부 | 191 | 206 | 1.52 | 1,959 | 1,820 | -1.46 |
| | 계 | 286 | 301 | 1.03 | 3,929 | 3,967 | 0.19 |
| 농촌 총계 | | 2,223 | 2,385 | 1.41 | 7,169 | 7,379 | 0.58 |

자료: 통계청(각 연도). 인구총조사; 송미령 외(2022); 심재현, 민경찬(2023).

농어촌의 고령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젊은 세대 인구의 유출, 성비 불균형이 심화하는 추세

- 농어촌의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젊은 세대와 아동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면 지역에서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함.
 - 2015년 대비 2020년에 65세 이상 인구는 31만 명이 증가했지만, 20~40세 인구는 4.7만 명, 15세 미만 인구는 이의 두 배 수준인 8.1만 명이 감소함.
- 젊은 세대 유출과 2030세대의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많은 농어촌지역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워짐.
 - 읍·면 중 아이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거나 10명 이하로 태어나는 곳이 '15년 706곳에서 '19년에는 전체 읍·면의 과반인 789곳까지 늘어남(통계청, 2020).

〈그림 3〉 농촌지역의 인구 피라미드 변화



자료: 송미령 외(2021).

1.2. 농어촌의 정주 여건과 인구 전망

농어촌의 인구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주 여건의 도-농 격차는 계속 심화되고 있음

- 농어촌은 생활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도 도시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2022년 도시·농촌 주민의 정주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분만의료서비스(-2.2점), 의료서비스(-1.9점), 대중교통(-1.9점), 문화여가 프로그램(-1.3점) 등 대다수 항목에서 농촌 주민의 만족도가 도시 주민보다 1~2점 이상 더 낮게 나타남.
- 2018년과 비교 시 도시 주민의 만족도는 소폭 상승한 데 비해 농촌 주민은 대다수 항목에서 하락하여 격차가 더 벌어짐. 즉, 양적 측면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농촌의 정주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음.

〈그림 4〉 도-농 간 생활서비스에 대한 정주민족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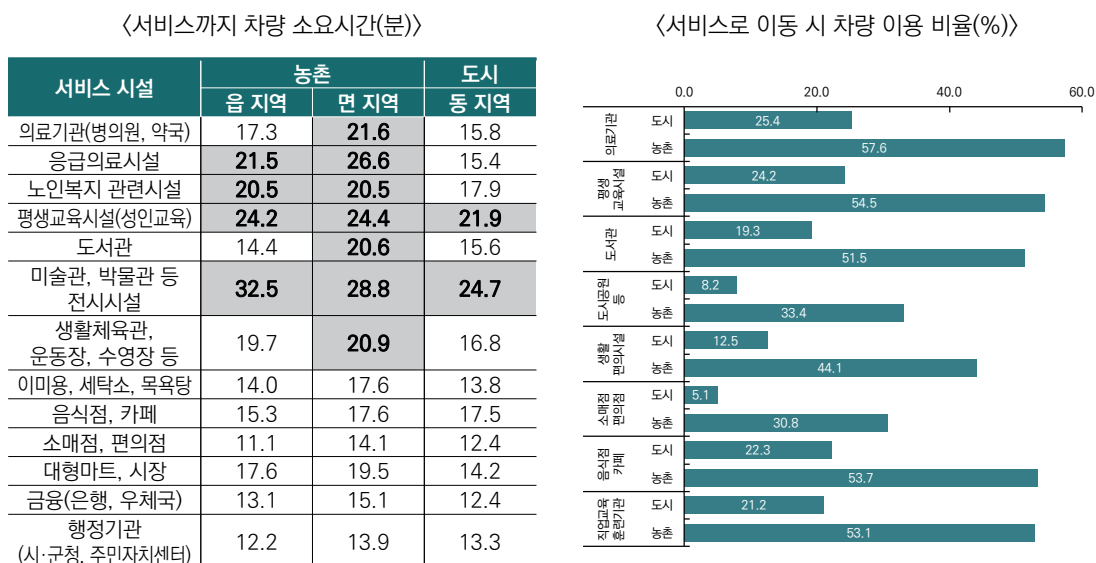


주: 농어촌 주민의 정주민족도 조사(2018년, 2022년)에서 도시 및 농촌 주민이 0~10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임.
 자료: 심재현, 민경찬(2023).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접근성이 열악한 환경

- 농어촌 주민의 의료, 교육·문화시설까지 차량 이동 시간은 도시에 비해 5~10분 정도 더 소요됨. 특히 면에 거주하는 주민이 도시민에 비해 더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어촌지역은 고령자 비율이 높고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더 불편함을 고려하면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서비스 접근성은 더 열악함. 도시에 비해 농어촌 주민의 차량 이용 비율이 훨씬 높으나, 자가운전이 불편해 대중교통이 긴요한 고령자의 경우 농촌에서 각종 생활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큼.

〈그림 5〉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의 서비스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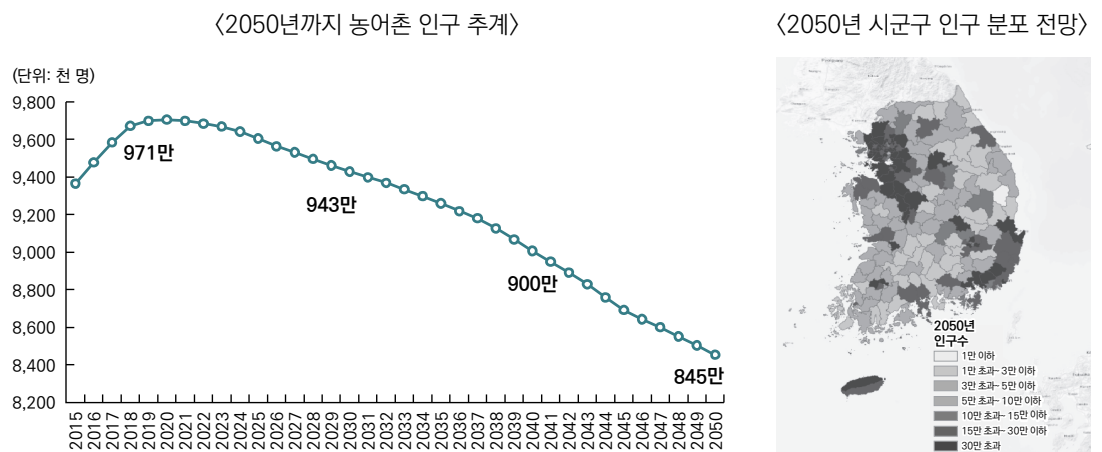


주: 차량으로 20분 이상 소요 시 음영으로 표시함.
 자료: 심재현, 민경찬(2023).

상대적으로 열악한 삶의 질 여건 속에서 2050년 농어촌 인구는 845만 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농어촌 인구는 2010년 이후 18%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삶의 질 여건 속에서 2050년 무렵에는 845만 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
- 2015년에 20.9%였던 농어촌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50년에 이르면 30.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에 따라 2015년에 0.50였던 부양인구비는 2050년에 0.81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

〈그림 6〉 농어촌 인구 전망(2050년)



주: 농어촌 인구 추계는 심재현 외(2018)의 미래 전망 모형에서 이동을 및 출산율 가정을 변경하여 추계함.
자료: 심재현, 민경찬(2023).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농어촌 삶의 질을 저하하는 악순환 고리를 단절하려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정책 거버넌스 구축과 혁신적 공공투자가 필요

-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저출생·고령화, 저밀도 분산 거주 등에 따라 대중교통 여건 등 접근성 저하 및 서비스 공급 주체 이탈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서비스의 질 저하 및 전달 약화, 인구 유출과 지역 활력 저하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됨.
- 악순환 속에서 서비스 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삶의 질 여건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농어촌 삶의 질 저하의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영역에 대한 효과적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혁신적 공공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변화하는 사회 여건을 반영하여 정책의 주 대상과 목표를 농어업인 또는 농어촌 주민, 그리고 주소 이전을 통한 거주인구화로 한정하지 않고, 생활인구 또는 관계인구의 적극적 창출과 지지를 통해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 최근 확대되고 있는 대안적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트렌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촌에서의 삶을 시도해보려는 사람들의 관심과 의향을 실제 농촌재생의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도 삶의질정책의 실효적 추진이 중요함.

02

삶의질정책 추진 현황 및 추진체계 여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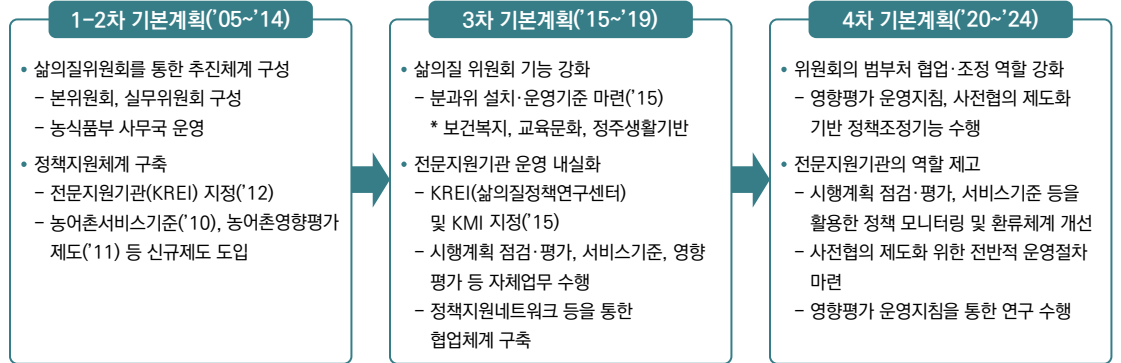
2.1. 삶의질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

- 정부는 농어촌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질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삶의질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삶의질특별법은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함(법 제1조).
- 삶의질위원회를 통해 5년 주기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삶의질 기본계획’)을 수립함. 삶의질기본계획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련된 관련 부처들의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이자 범부처계획임.¹⁾
- 현행 제4차 기본계획(‘20~’24)은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비전으로 하여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4대 전략으로 계획기간 동안 총 51조 원 투융자 규모²⁾의 범부처 정책을 담고 있음.
- 현행 삶의질정책 추진을 위해 삶의질시행계획 점검·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 농어촌 영향평가, 농어촌 주민 정주민족도 조사, 사전협의제도 도입·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 농어촌지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우수사례를 조사하고 소개·확산시키는 역할도 수행함.

1) 삶의질기본계획은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기초생활 여건 개선, 자연환경과 경관 보전 및 농어촌산업 육성,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 확대,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 농어촌서비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함.

2) (‘20) 10조 544억 원, (‘21) 10조 4,428억 원, (‘22) 10조 5,824억 원, (‘23) 10조 1,579억 원, (‘24) 9조 8,253억 원 등 총액 51조 629억 원.

〈그림 7〉 삶의질정책 관련 주요 변화



자료: 심재현(2022).

삶의질시행계획 점검·평가와 농어촌 영향평가(Rural proofing)³⁾ 를 통해 범부처 정책의 개선 방안 제시

- 정부 부처별로 추진하는 삶의질정책 174개 사업('21년 기준) 대상으로 정책 성과와 실행 과정을 매년 점검·평가하여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함.
 - 4차 기본계획 기간('20~'24) 중 점검·평가 총점은 당초 설정된 성과 목표를 무난히 달성하였으나, 첫 해인 '20년(90.3점)에 비해 '21년(89.3점)에는 1.0점 하락함.
- '24년도의 시행계획 점검·평가는 '23년부터 운영 예정인 농어촌 사전협의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대상 정책의 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여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표 2〉 삶의질시행계획 점검·평가('20~'21년)

| 삶의 질 4대 전략 | 점검평가 대상 과제 수 | 정책수행도 평가 (100점 만점) | |
|---|--------------|--------------------|-------|
| | | 2020년 | 2021년 |
| 보건·복지 전략 (생애 주기별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 39개 | 91.5점 | 89.2점 |
| 교육·문화 전략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 33개 | 89.9점 | 89.6점 |
| 정주생활기반 전략 (농어촌다움이사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 65개 | 90.4점 | 89.1점 |
| 경제·일자리 전략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 37개 | 89.4점 | 89.5점 |
| 시행계획 점검·평가 대상 전체 과제 | 174개 | 90.3점 | 89.3점 |

자료: 정문수 외(2022).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계획, 사업 등이 농어촌 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평가하고, 농어촌의 특성(불리한 접근성, 낮은 인구밀도, 사업체의 영세성, 경제활동 이력의 특수성, 낮은 재정자립도, 사회자본 부족 등)에 맞게 해당 정책이 수립·시행되도록 점검·보완하기 위한 정책조정제도를 의미함.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을 통해 공공서비스 확충의 제도적 기반 마련

- 농어촌서비스기준⁴⁾ 운영을 통해 농어촌지역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항목과 수준을 매년 점검함.
 - 현행 기준은 보건의료·복지, 정주여건, 교육·문화, 경제활동 등 4대 부문의 19개 항목으로 구성됨.
- '21년 기준 19개 항목 중 12개 항목에서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됨('20년은 11개 항목).

〈표 3〉 농어촌서비스기준 측정 항목 및 국가최소기준

| 부문 | 항목 | 국가최소기준 | 목표치 (분, %) |
|---------|-----------|--|------------|
| 보건의료·복지 | 진료 | 차량을 이용하여 30분~1시간 이내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하다. | 30분~1시간 |
| | 응급의료 |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구급차가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30분 |
| | 영유아 보육·교육 | 차량을 이용하여 20분 이내로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다. | 20분 |
| | 노인복지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돌봄 등의 서비스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 80% |
| 교육·문화 | 초·중등교육 | 차량을 이용하여 10분 이내에 농어촌 초등학교·중학교에 도달할 수 있다.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초등학교·중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 10분 |
| | 평생교육 | 읍·면내에서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설치·지정된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 70% |
| | 문화 | 차량을 이용하여 40분 이내에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에 도달할 수 있으며,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 40분 |
| | 도서관 | 차량을 이용하여 10분 이내에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 10분 |
| | 체육시설 | 차량을 이용하여 30분 이내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30분 |
| 정주 여건 | 주택 | 주민 누구나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적합한 주택에서 거주한다.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말한다)가 사용된 주택 지붕의 철거·개량 비율을 23% 이상으로 한다. | 23% |
| | 상수도 |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85% 이상으로 한다. | 85% |
| | 하수도 | 군 지역 하수도 보급률을 76% 이상으로 한다. | 76% |
| | 난방 | 읍지역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68% 이상으로 한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엘피지(LPG) 소형저장탱크를 활용하여 가스 보급을 확대한다. | 68% |
| | 대중교통 | 행정리 내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 목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수단(이하 “대중교통수단”이라 한다)을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선에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1일 왕복 1회 이상 운항된다. | 100% |
| | 생활폐기물 | 행정리내에서 영농·생활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다. | 마을 내 |
| | 방법설비 |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의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의 설치율을 60% 이상으로 한다. | 60% |

4) 2010년 7월 삶의질특별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도입하고 2011년 1월부터 시행함.

(계속)

| 부문 | 항목 | 국가최소기준 | 목표치 (분, %) |
|-------|--------------|--|---------------|
| | 경찰순찰 |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장소·시간에 대하여 탄력적인 방식의 순찰을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 100% |
| | 소방출동 |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지역별 목표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 70% |
| 경제 활동 |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창업·취업 관련 지원센터에서 사업체 창업·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1년 1회 이상 받을 수 있는 비율을 86% 이상으로 한다. | 86% |

자료: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시행 2021. 6. 22.,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43호, 2021. 6. 22., 일부개정) 별표. 검색일: 2023. 3. 25.

농어촌 영향평가를 통해 관계 부처 정책의 개선을 유도하는 성과 달성

- '21년에는 농어촌 통학여건 개선, 농촌형·도시형 교통모델 개선 등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영향평가를 추진함.
 - 농어촌 통학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종전 '농어촌 초·중·고 통학버스 제공 비율'에서 '농어촌지역 통학수단 수혜 학생 비율'로 지표를 변경하고 '유아·저학년 어린이용 보호장구 설치 차량 비율' 지표를 신설했으며, 교육부에서 농어촌 통학차량 안전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지방교육청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통학여건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 개선 성과를 달성함.
 - 농촌형·도시형 교통모델 개선과 관련해서는 종전의 이용자, 운행 대수 등 정량지표에서 대중교통 소외지역 해소율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체감도를 증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하고, 국토부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 추진 시 소외지역 해소율이 낮은 읍면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하는 정책 개선 성과를 얻음.
- '22년도 영향평가는 분만의로 도농 간 격차 해소(복지부), 농어촌 영유아 돌봄시설 확대(복지부, 농식품부) 등 정책과제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23년 삶의질위원회 안건 상정에 앞서 사업 개선, 지표 개선 등 농어촌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하기 위한 부처 협의·조율 과정에 있음.

농어촌 주민의 정주만족도 모니터링 및 국정과제 성과 지표 지원

- '12년부터 매년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삶의 질 수준으로서 정주만족도를 조사하여 삶의질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척도이자 정책 발굴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
 - 매년 농어촌 주민 2,300여 명, 도시민 800여 명에 대한 정주만족도 결과를 분석하여 도시-농촌의 주관적 삶의 질 인식 수준을 비교 파악함.
- 정주만족도 조사 결과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의 성과 지표 중 하나인 농어촌 삶의 질 만족도 향상('21년 5.7점(도시는 6.5점) → '27년 6.7점)을 측정하는 지표로도 활용됨.

사전협의제도 도입·운영을 통해 시행계획의 환류체계 강화

-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필요성이 높은 사업을 삶의질위원회에서 사전협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사업의 소관 부처가 제도 개선 사항과 예산 조정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사전협의제도를 '22년 12월부터 새롭게 시행함.
-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환류체계를 강화함.

농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 관련 다양한 우수사례 발굴·확산

-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제공 사례, 농어촌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사례, 빈집정비를 통한 공동체 공간화 사례 등 정책 지원이나 공동체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역에 만들어진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소개·확산 시켜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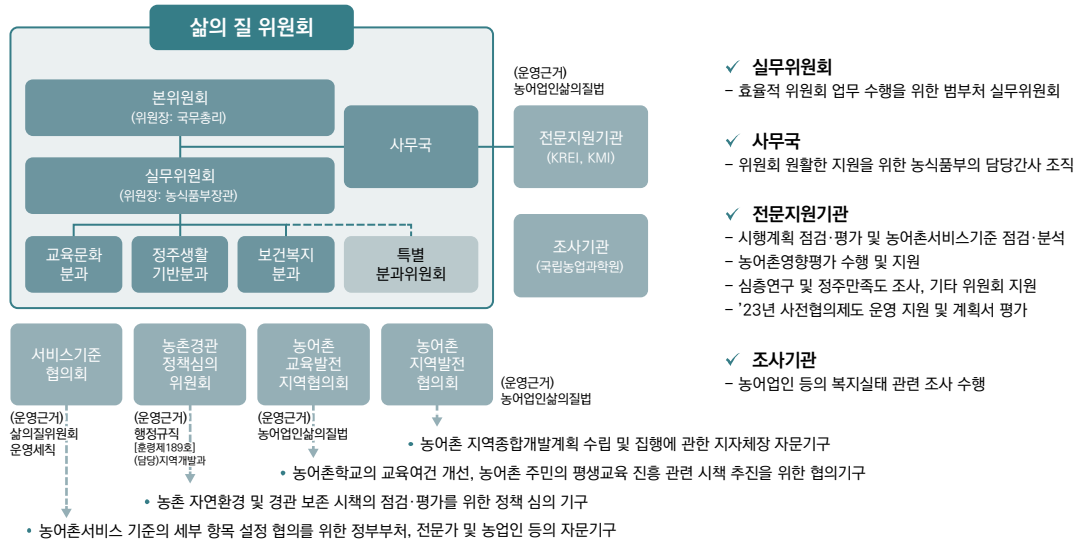
2.2. 삶의질정책 추진체계

- 삶의질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당연직으로서 14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15명, 위촉직으로서 민간위원 9명 등 총 25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되며, 삶의질기본계획 수립·변경 심의,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및 의견 조정, 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 등을 수행함.
- 삶의질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둠(법 제10조 7항). 실무위원회는 삶의질향상시행계획 수립 및 조정 심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관련 사항 심의, 농어촌특별세로 지원되는 사업의 총괄·조정 및 점검·평가 관련 사항 심의 등을 수행함.
 - 실무위원회는 농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당연직 정부위원 21명, 위촉직 민간위원 15명 등 총 3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삶의질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식품부의 담당 간사 조직(현재 농촌정책과)이 사무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농식품부장관이 위원회의 간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⁵⁾되어 위원회 운영과 사무국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 그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삶의질기본계획 수립 지원, 삶의질시행계획 점검·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분석, 농어촌영향평가 수행 및 지원, 사전협의제도 운영 지원 및 계획서 평가, 정주민족도 조사, 농어촌 주요 이슈에 대한 심층연구 수행 등 제반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립·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삶의질특별법 제 46조 1항).

-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의 점검·분석
- 정책의 분석·평가 지침의 검토 및 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전문지원기관이 수행하도록 결정하는 사항

〈그림 8〉 삶의질정책 추진체계



자료: 심재현(2022).

2.3. 삶의질정책 추진체계 한계

범부처 정책으로서의 도입 취지 약화

- 삶의질정책은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정책의 영역과 대상 범위가 대단히 넓은 포괄적 정책임.
- 그러나 정책 수혜자가 농어업인, 노인 등 특정 인구 계층에 초점이 맞추어져 추진되고 있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위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정책 대상인 청년, 여성,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제1·2·3차 기본계획이 진행되면서 부처 예산 중 농식품부의 예산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타 부처의 예산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범부처 계획으로서의 성격이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임.
 - 기본계획 기간별 농어촌 유관부처(농식품부 등) 예산 비율: '05(1차)25.8% → '10(2차)66.6% → '15(3차)58.4%
- 삶의질위원회의 부처 간 협력·조율 기능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여 효과적·통합적 정책 성과를 창출하는 데에 한계를 드러냄.

농어촌서비스기준 등 필수 수요를 지원하는 정책수단 불충분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항목별 이행실태 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시행계획 사업은 일부에 불과하며, 사업이 있는 경우라도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함.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의 이행을 위한 부처 간 협력·조정 등 정책 환류 미흡

- 삶의질시행계획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1·2·3차 기본계획이 수립·추진될 때마다 점검·평가 방식을 개선해왔으나 부처 간 협력·조정 등 환류가 미흡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다양한 부처 정책에 대한 환류의 수단으로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임.

농어촌 삶의 현장에서는 정책 체감도를 높일 필요성 제기

- 시행계획 평가 결과에 대한 부처의 정책 환류가 미흡한 문제는 필연적으로 농어촌 현장에서 삶의질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지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지게 됨.
- 또한 정책 체감을 위해서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나, 그러한 사안은 이해관계자들 간 많은 논란과 갈등이 수반되어 부처 간 협의·조정을 이끌어 내기 어려운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음.

2.4. 농특위원회로의 삶의질위원회 통합 논의

삶의질위원회 기능을 농특위원회로 이관한다는 결정에 따라 위원회 통합을 위한 개편 절차 진행 중

- 행정안전부의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22. 7. 5.)에 따라 삶의질위원회 기능을 농특위원회로 이관 하도록 결정됨.
- 기능 이관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농특위법, 삶의질특별법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법 개정을 추진 중임.
 - 국회 농해수위 접수('22. 9. 30. 정부발의) 및 상임위 회부('22. 10. 4.)
- 삶의질위원회 기능이 이관되면 삶의질기본계획은 농특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될 예정임.

농특위원회는 조직을 확대하고, 농어업·농어촌 정책 영역을 넘어서는 범부처 정책에 대한 영향력도 확대

- 삶의질위원회와의 통합을 계기로 농특위원회는 이전보다 확장된 역할을 수행하게 됨. 정책 조정 기능이 제한적이고 집행 기능이 없다는 한계를 지적받아 왔던 농특위원회의 기능이 일부 보강될 예정임.
- 이전보다 확장된 역할 수행을 위해 농특위원회가 확대될 예정으로, 위원 규모를 현행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 농특위원회는 2019년 출범 이래 주로 농어업 분야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활동해오고 있으나, 다양한 부처가 추진하는 삶의질정책이 통합 농특위원회의 활동 범위에 들어오게 되면서 위원회가 다루는 정책 영역이 농어업·농어촌 정책 영역을 넘어 크게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임.

새 시대 농어업인 삶의질향상정책 개선 방향

-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 목표⁶⁾하에 농업농촌정책 분야와 관련해서는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 안정 강화,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등 크게 4가지 국정과제를 제시함.⁷⁾ 특히 농촌공간의 쾌적성·편리성 제고 및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농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농촌공간계획제도를 도입·운영하고자 함.
- 농촌공간계획제도는 농촌의 경제·사회·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계획적·체계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는 한편,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증진시키는 재생을 위한 것으로, 주거·정주여건 개선, 일자리·경제 활성화, 사회·생활서비스 확충 등 다양한 삶의 질 관련 영역을 포괄함. 농어촌정책은 점점 더 기존의 농식품부 소관 정책 범위를 넘어서는 다양한 영역과 주제에 걸친 이슈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운영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국가와 국민 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2019년 4월 출범함
- 농특위원회는 위원장 1명(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과 5명의 정부위원, 24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된 분위원회, 그리고 3개 분과위원회 및 4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
 - * 정부위원: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 위촉위원: 생산자단체 등 농업인단체 대표(12명 이내) 그리고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12명 이내)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 현재 농특위원회 사무국에는 30여 명의 소속 인력이 농특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그간 활동의 결과로 국가식량계획 수립 지원,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식량자급률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임업직불제 도입기반 마련 등 성과를 얻음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 성과

| | |
|------------------------------|-----------------------------------|
| •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 • 국가식량계획 수립 지원 |
| • 경자유전 원칙 달성을 위한 법률 개정 | •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식량자급률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 |
| • 지방분권화를 위한 농정토대 마련 | • 어촌지역 소멸 대응 전략 의결 및 해수부대책 마련 지원 |
| • 농어촌 특화 사회적경제모델 확산 | •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연근해업 혁신 방안 마련 |
| • 임업직불제도입기반 마련 | • 어촌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지원 |
| •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흡수 증진기반 마련 | • 여성농업인 정책 기반 확립 |

6) 6대 국정목표는 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②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③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④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⑥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임.

7) 120대 국정과제 중 ‘약속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해당 과제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정부. (2022. 7.).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자료를 참조.

농어업·농어촌 이슈에 대한 장기적·연속적 활동이 필요, 그러나 법상 존속기한으로 인해 정책 연속성과 책임성 확보에 문제

- 취약한 농어업·농어촌의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어 농어업계에서는 농특위가 실질적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농특위는 법 시행 이후 5년 동안 존속한다(농특위법 제13조)는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어 농특위원회가 관여하는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짐.
- 현행법에 따르면 1년여밖에 남지 않은 2024년 4월에 농특위원회가 폐지될 예정으로, 이에 대해 관련 정계와 산업계, 학계 등에서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대부분의 다른 대통령소속 위원회들은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함.
 - 관련하여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3. 2. 2.)은 농특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삭제를 제안함.

〈표 4〉 대통령소속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비교

| 구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국가우주위원회 | 규제개혁위원회 |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국민통합위원회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
|-------|----------------|-------------|--------------|--------------------------------|---------------------------------|------------------|----------------|-----------------------------------|--|
| 설치 근거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조 |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 |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 |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조 |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조 |
| 존속 기한 | 미설정 | 미설정 | 미설정 | 미설정 | 2024. 4. 24. | 미설정 | 미설정 | 2027. 5. 31. | 2027. 7. 1. |
| 근거 | - | - | - | - | 법 제13조 | - | - | 운영규정 제14조 | 운영규정 제14조 |

자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2023).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역할과 발전 방향 토론회 발표자료.

03

향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역할과 발전 과제

3.1. 농어촌 삶의질정책 추진의 지속성 확보 시급

미래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삶의 질 정책 추진의 지속적 기반이 담보될 필요

- 삶의질위원회가 2024년 4월로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농특위로 통합됨에 따라 존속기한이 없었던 삶의질정책 추진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담보될 수 없게 됨.
- 그러나 현재 농업농촌이 맞고 있는 수많은 도전과제들은 장기적 비전과 그에 따른 지속적·일관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며 '24년 4월까지 단기에 해소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특히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문제는 일시적,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고 대단히 폭넓은 다수 부처 정책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협의, 조정 등이 필요한 사안이며, 삶의질정책 추진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발현됨.
- 따라서 위원회 존속기한을 두지 않았던 삶의질향상특별법에서와 같이 통합 농특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삭제가 어렵다면 적어도 농특위의 존속기간을 장기간 연장하여 정책 대응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
- 삶의질정책의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발현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슈별 정책 대응을 넘어 삶의질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2. 다부처 정책에 대한 조정 기능 실질화 및 삶의질정책의 역할 제고

삶의질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정책 조정 기능을 통합 농특위원회로 연결

- 통합 농특위원회가 기존 농특위원회 및 삶의질위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정책 추진상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여 위원회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농특위원회의 경우 대통령 자문위원회로서 관련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협의(농특위법 제2조)와 협조 요청(농특위법 제11조)에 한정되어 있음.
- 위원회 통합을 계기로 삶의질위원회가 수행하는 정책 조정 기능, 즉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및 점검·평가 기능이 통합 농특위원회에서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삶의질위원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부처 정책 환류 미흡 문제를 극복하고 정책 조정 기능을 실질화하는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삶의질위원회의 정책 조정 기능

- 삶의질위원회는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법 제10조 1항), 다음의 사항을 심의함(법 제10조 2항)
 - 삶의질향상기본계획
 - 전년도 삶의질향상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
 - 해당 연도 삶의질향상시행계획
 -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도 개선, 예산 조정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
 -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 그 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농촌협약 등으로 삶의질정책 활용도 확대해 갈 필요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농촌협약 등 협의의 농업농촌정책 범위를 넘어 다양한 삶의 영역이 관여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정책 추진에 있어 삶의질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함.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직접 사업 추진: 농특위 정책브랜드 과제 발굴·제안

- 삶의질시행계획상 정책사업은 부처의 기존 사업 중 농어촌과 연관성 높은 사업의 묶음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 농특위원회가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추진 또는 조정하여 가시적 성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삶의질향상기금(가칭) 등 신규 재원을 마련하거나 농특위 차원의 삶의질정책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환경부, 행안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지원하는 범부처 협업 과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제안함.

3.3. 실효성 있는 통합 농특위원회 활동을 위한 추진체계 전문성 강화

위원회/실무위원회-사무국-전문지원기관으로 이어지는 추진체계의 전문 역량 보장

- 정책 조정 기능을 확대하고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활동 수행을 위한 전문 역량이 필수적임.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대표적 정책인 삶의질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부처 정책에 대한 통합 농특위원회의 정책 평가, 조율 등을 위한 역량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현재 농특위원회에는 농어업 및 축산업, 농어촌, 식품 등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위원 및 위촉위원을 구성하고 있어⁸⁾ 삶의질정책이 포괄하는 정책 이슈를 다루기에 한계가 있음. 향후 통합 농특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에서도 의료·복지, 문화, 지역개발, 환경, 교육 등 정책영역 다방면에 걸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과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범부처 실무위원회 역시 삶의질정책이 포괄하는 다양한 정책 이슈를 다룰 수 있도록 구성·운영되어야 함.
- 자문기구 성격의 기존 농특위원회에 관련 정책에 대한 점검·평가·환류 등 기능을 가진 삶의질위원회가 통합됨에 따라 관련 업무 절차 전반을 꾸려나갈 담당간사 조직으로서 통합 농특위원회 사무국의 전문성 역시 요구됨.
-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삶의질향상계획의 수립과 평가, 루럴프루핑 관점의 정책 조정 등을 위한 조사·연구 등 위원회 과업수행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의 역할도 중요함.

전문지원기관 지정·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기능 강화

- 전문성을 갖춘 지원기관의 기능이 위원회 운영과 사무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삶의질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법 제46조)를 가지고 있으나, 농특위원회의 경우 전문지원기관 지정 근거가 없음.
- 삶의질정책을 포함하여 통합 농특위원회에서 다루어질 보다 확대된 농업·농촌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삶의질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운영 중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과 통합 농특위원회 및 사무국과의 역할 분담과 협업체계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전문지원기관을 통한 지원체계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일관적·안정적으로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전문지원기관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함.
 - 프랑스 국토결속국가기구(ANCT)의 국토관측소(Observatoire des Territoires) 사례와 같이 각종 주제에 대한 농어촌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하여 데이터기반의 농업농촌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주체들 간 협의, 대국민 소통과 공감대 형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삶의질정책사업의 관리·모니터링, 평가 등 업무 전반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농어촌삶의질진흥원(가칭)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8)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리고 생산자단체 등 농어업인단체의 대표(12명 이내),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1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위원이 됨(농특위법 제3조).

3.4. 농어촌 현장까지 전달·체감되는 정책 거버넌스 구축

농어촌 현장에서의 정책 체감도 제고 노력

- 앞서 제기한 추진체계 전문성 강화를 토대로 현장까지 전달될 수 있는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야 함.
- 위원회/실무위원회-사무국-전문지원기관으로 이어지는 위원회 활동의 추진체계를 넘어 중앙정부 정책이 지자체와 주민까지 전달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농어촌정책이 곧 삶의 질 향상 정책은 아니므로, 농어촌주민의 생활 현장 가장 가까이에서 일상적으로 겪는 문제 현안들을 다루는 삶의질정책의 고유한 특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전문지원기관의 조사·연구 등 간접적 방식을 통해 지자체, 주민 등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지역·현장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3.5. 농어업·농어촌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및 지지 기반 마련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대안적 삶의 공간으로서 잠재성에 대한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

-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기후 위기에 따른 생태적 전환, 사회 포용성 이슈 등 국민의 건강과 미래 대한 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어업·농어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농어업·농어촌 정책은 그러한 가치를 국민에게 충분히 어필하고 공감대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음.
- 통합 농특위원회의 활동은 농업농촌 분야의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을 넘어 일반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농어업·농어촌 가치를 창출·전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이미 농어촌은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공간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음.
 - 최근 농어촌 곳곳에서 나타나는 사례는 다양한 대안적 삶을 실현하는 공간으로서 농어촌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그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바탕으로 삶의질정책 이슈가 더 이상 농어업·농어촌 분야에 국한되지 않도록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 기반을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함.

참고문헌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23).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역할과 발전 방향 토론회 발표자료.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시행 2021. 6. 22.,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43호, 2021. 6. 22., 일부개정) 발표(<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2208#J2232293>). 검색일: 2023. 3. 25.
- 대한민국정부. (2022. 7.).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 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심재현, 정문수, 한이철, 민경찬. (2021). 인구감소시대, 농촌 삶의 질 향상 정책 개선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성주인, 심재현, 한이철, 권인혜. (2022). “신 균형발전 전략과 과제: 도농상생을 위한 농촌 활성화.” KREI 농정포커스 제 206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심재현, 민경찬. (2023).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농촌 생활서비스 혁신.” 농업전망 2023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심재현, 송미령, 이정해, 서형주. (2018). 미래 국토 전망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방안 연구(2/3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심재현, 정문수, 김용욱, 김민석, 민경찬, 구분아. (2021). 2021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심재현. (2022). 2022년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성과와 과제. 삶의질정책협의회 발표자료.
- 정문수, 김민석, 민경찬, 유은영. (2022). 2021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통계청 보도자료. (2022. 9. 5.).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 통계청. (각 연도). 인구총조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

KREI 농정포커스

감 수 유찬희 연구위원 061-820-2022 chrhew@krei.re.kr
내 용 문 의 송미령 선임연구위원 061-820-2351 mrsong@krei.re.kr
발 간 물 문 의 유정인 선임전문원 061-820-2282 edela@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농정포커스 제215호 새 시대 농어업인 삶의질향상정책 개선 방향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3. 3.
발 행 인 김홍상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S N 2672-015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